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감축과 경영회계과 신설 및 지적과 통폐합 등에 따른 2000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과 생산적인 구정수행체계의 확립을 도모함.

2. 주요골자

- “사회진흥과”를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로 이관함.
- “경영회계과”를 신설하고, ‘경리·재산경영·시설관리담당’을 둠.
- “민원봉사과”를 “지적과”와 통폐합하여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민원담당’을 배치하여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설치기준, 직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0조에서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의 설치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심의 범위는 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부의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온 그 동안의 광주광역시 서구 본청 행정기구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1998년에는 기존의 3국 2실 1담당관 15과를 3국 2실 13과로 개편하였는바,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문화홍보실을 폐지하며,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기타 4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또한, 1999년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총무과와 회계과를 통합, 15실·과를 14실·과로하여 1과를 감축하였고, 3개과의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였으며,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대민한시기구로써 2과를 신설하였습니다.

- 본 건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규정된 1개과를 감축하고, 인·허가 업무 창구일원화를 위한 인·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종합민원과를 신설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 중 민간협력담당과 문화예술·문화센터담당은 총무과로, 청소년담당은 주민자치과로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가 1999년 조직개편 당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2과의 신설에 따라 설치되었고 그 중 1과의 존속기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영회계과를 신설하여 경리·재산경영·시설관리담당을 두고 기획관리실장의 분장사항이었던 경영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과 도시국장의 분장사항이었던 청사 및 행정재산의 관리를 총무국장의 분장사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임. 경리업무, 재산경영, 시설관리기능은 그 업무의 성격상 전문화·분업화가 요구되고 또한 그 동안 총무과에서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인식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전문화의 원칙, 행정능률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등 권한배분의 원칙을 고려할 때, 청소위생과와 도시개발과의 기능과 그 편재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현재 청소위생과는 청소 및 폐기물처리기능과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지도 단속, 유해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 보건소업무 지도·감독 등 이질적인 기능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의 기능은 환경관리과·건축과·건설과·지적과의 기능과 성격 면에서 그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1개 과를 2001년 6월 30일까지 감축해야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기회에 청소위생과와 도시개발과의 기능과 그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종합민원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임. 이는 행정자치부 지침인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허가 업무창구 일원화를 위한 허가과의 설치 추진을 위한 것임. 허가과의 설치에 김포시가 수범운영중인 허가과 운영모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체제를 고객중심의 「민본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합민원기능을 1개의 기구에서 모두 해결·처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를 구현하자는 것임. 이는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만, 대규모 개발로 단기간에 유사민원이 집중되어 그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고안한 경기도 김포시의 특수사례를 획일적으로 전 자치단체에 확산시키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계 법규의 정비 없이, 1개의 사무실에 담당분야와 업무가 달라 책임한계도 모호한 이질적인 기능을 복합한다고 해서

소위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지는 다소 의문임. 따라서 허가과의 설치는 본 안대로 종합민원과를 설치하여 복합민원의 처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